

수원지방법원 2024. 9. 26 선고 2023나10075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9. 26 선고 2023나100756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11. 9 선고 2022가소1615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피고, 피항소인 용인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

담당변호사 김상일

변론 종결 2024. 7. 25.

판결 선고 2024. 9. 26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2가소16154 판결

주문

-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, 각 2,581,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각 2022. 11. 11.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전 248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공유지분권 상실일까지 연 553,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전년도 지급 돈에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용태

판사이수영

판사김경진